

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

의안 번호	70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01.
제출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 규정에 따라 2019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평창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2019년 제1차 평창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은
건물취득 1건 1동 495㎡ 1,050,000천원임
- 건물 취득
 1. 2019년 임산물클러스터 조성사업
산양삼 가공유통(전시판매) 센터 조성 : 1동 495㎡ 1,050,000천원

3. 붙임자료

- 가.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(총괄표) 1부
- 나. 2019년 1차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 1부
- 다.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사업계획서 1부
- 라. 관계법령 발취 1부

[붙임 가]

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(총괄표)

(단위 : m², 천원)

구 분		변경전			변경후			증△감			
	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
합계	토지	10	210,336	19,944,179	10	210,336	19,944,179				
	건물	4	2,463.8	5,216,387	5	2,958.8	6,266,387	1	495	1,050,000	
	기타										
취 득	매 입	토지	9	209,711	19,659,804	9	209,711	19,659,804			
		건물	4	2,463.8	5,216,387	5	2,958.8	6,266,387	1	495	1,050,000
		기타									
	교 환	토지	1	625	284,375	1	625	284,375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기 타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합계	토지	1	422	281,896	1	422	281,896				
	건물										
	기타										
처 분	매 각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교 환	토지	1	422	281,896	1	422	281,896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기 타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
[붙임 나]

2019년 제1차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 목록

(단위 : m²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예정가격	취득 시기	취득사유	비 고 (소유자)
	지목	소재지	수량				
건물취득 합계 (1건 1동)			495	1,050,000			
소계 (1건 1동)			495	1,050,000			
1	임야	봉평면 창동리 산 139	495	1,050,000	2019	산양삼 가공유통 (전시판매) 센터조성	평창군

[붙임 다]

군유재산 취득 및 처분 사업계획서

사 업 명	부서	쪽
1. 2019년 임산물클러스터 조성사업 산양삼 가공유통(전시판매)센터 조성	산림과	6

2019년 임산물클러스터 조성사업 - 산양삼 가공유통(전시판매)센터 조성 -

- 평창산양삼 특구활성화 일원으로 유통 및 가공 활성화를 위해 산림청으로부터 ‘2019년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’ 공모에 선정되어 군유림 내 산양삼 가공유통(전시판매)센터를 신축하고자 함

□ 사업개요

- 위 치 :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산139번지(군유림)
- 사업량 : 가공유통 센터 1개소 495㎡
- 사업비 : 2,000,000천원 (국비 50%, 지방비 50%)
- 사업기간 : 2019년 12월까지
- 사업내용
 - 산양삼 생산·가공·유통(전시판매)센터 신축
 - 산양삼 가공기계 설치 및 기반시설(상하수도 등) 조성 등

□ 추진사항

- 사업신청 (평창군 → 강원도) : 2018. 7. 20.
- 현지실사 (임업진흥원) : 2018. 9. 13.
- 조건부 선정 (강원도 산림소득과-13327호) : 2018. 9. 19.
- 최종선정 (강원도 산림소득과-17659호) : 2018. 12. 10.

□ 검토사항(필요성)

- 봉평면 창동리 산139번지는 현재 군유림으로 평창산양삼 특구활성화 일원으로 산림소득 증대를 위해서 산림청으로부터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이에 2019년도에 산양삼 가공유통(전시판매)센터 신축이 타당함
- 토지 취득 비용을 제외한 건축물, 공작물 취득 비용이 10억원 이상이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업임

□ 취득대상 재산내역

○ 토지

(단위: m², 천원)

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	편입 면적	재산가액		취득 시기	소유 자
					기준가격	예정가격		
계								
			해	당	없	음		

○ 건물

(단위 : m², 천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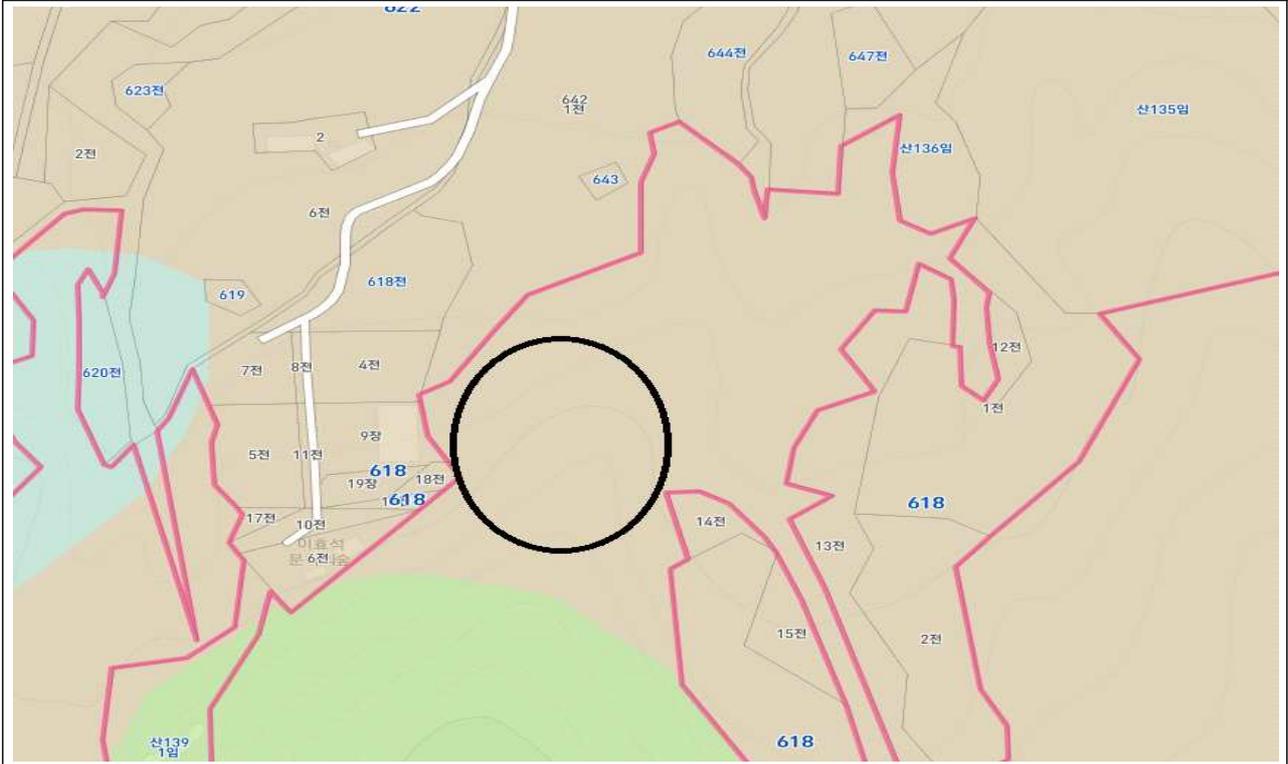
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	편입 면적	재산가액		취득 시기	소유자
					기준가격	예정가격		
계			503,678	495				
봉평면 창동리	산139번지	임야	503,678	495	1,050,000	1,050,000	2019 (하반기)	평창군

※ 2019. 1. ~ 4. 까지 인허가 및 실시설계 후 정확한 기준가격 책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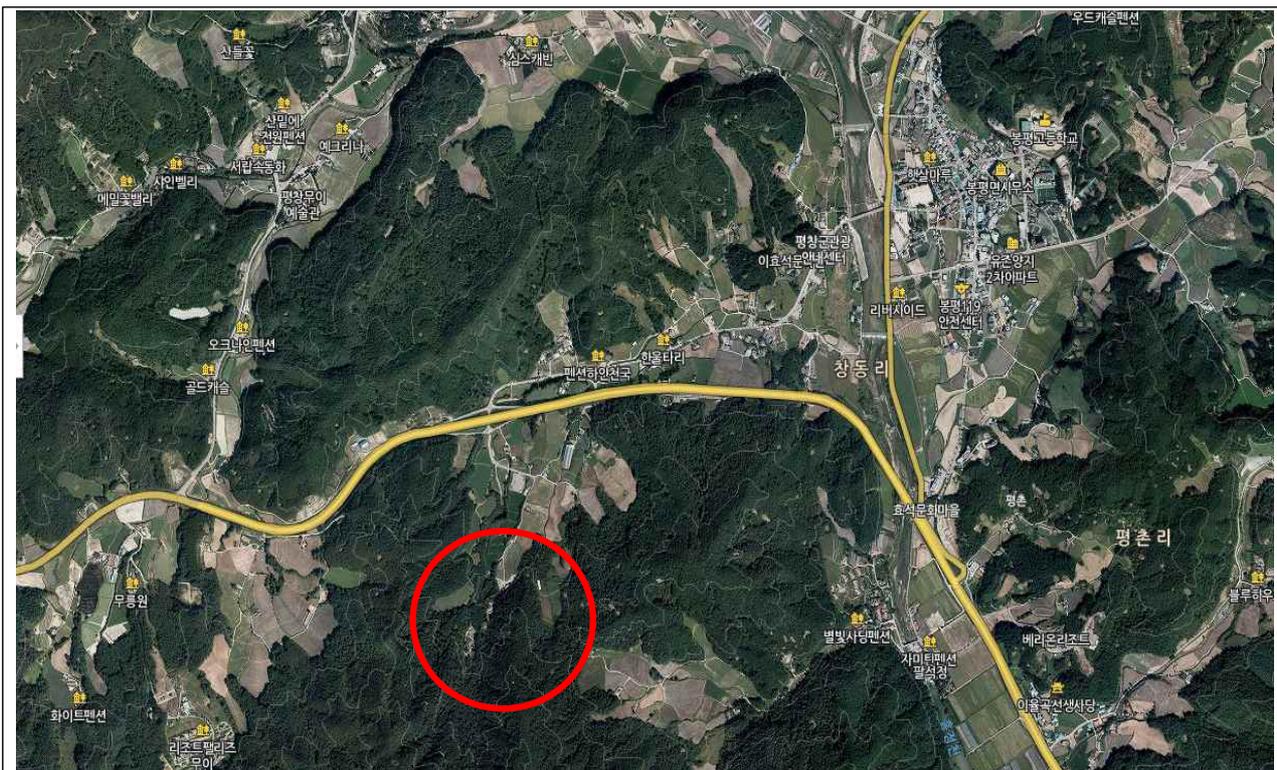
□ 향후계획

- 인허가 및 실시설계 추진 : 2019. 1월 ~ 4월
-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: 2019. 1월
- 공사 착공 : 2019. 5월
- 공사 준공 및 소유권 등기 : 2019. 12월

□ 지적도



□ 위치도



□ 전경사진



(열람용)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
- 토지 -

고유번호 1450-1996-826668

[토지]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산139

[표 제 부] (토지의 표시)					
표시번호	집수	소재지번	지목	면적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4)	2001년2월2일	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산139	임야	516694㎡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08월 16일 전산이기
2	2008년7월9일	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산139	임야	609104㎡	분할로 인하여 임야 7400㎡를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산139-1에 이기
3	2012년5월23일	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산139	임야	503678㎡	분할로 인하여 임야 427㎡를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산139-2, 임야 3588㎡를 동소 산139-3, 임야 554㎡를 동소 산139-4, 임야 947㎡를 동소 산139-5에 이기

[갑 구] (소유권에 관한 사항)				
순위번호	등기 목적	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 (전 1)	소유권이전	1962년7월20일 제1199호	1961년10월1일 권리귀속	소유자 평창군
2 (전 2)				합병한 등기 산142 임야386975㎡ 산145 임야5950㎡ 에 대하여도 전1번등기와 동일 사항의 등기일 집수 2001년2월2일 제942호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번 내지 2번 등기를 2002년 08월 16일 전산이기

관계법령 발취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- 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·변경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관리계획“이라 한다)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에 따른다.
-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,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관리계획“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
 - 가. 취득의 경우: 20억원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)
 - 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(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)
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
 - 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6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)
 - 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5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)

□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

제5조(심의회의 업무)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사항
2. 삭제 <2008.10.17>
3. 법 제11조 및 「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“이라 한다)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
4. 삭제 <2015.10.08.>
5. 법 제12조 단서에 따른 회계간 무상 이관
6.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, 취득·처분에 관한 재심의(다만,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)
7.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갱신을 위한 타당성 평가
8.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
9.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
10.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·처분
 2. 「건축법」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·처분
 3.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·처분
 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
- 가.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
- 나.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
- 다. 「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」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 인정(각 개별법령에 의한 사업인가 포함)시 취득·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